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C on proving intra-group services](#)

체코: 그룹 내 용역 거래에 관한 판결

2017 년 11 월, 체스케 부데요비체(České Budějovice) 지방법원은 그룹 내의 용역 제공 분쟁 건에 대해 납세자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쟁점 용역 대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비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납세자의 입증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납세자는 제공받은 특정 용역의 대가에 대해 대략적인 용역 내용만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여 용역의 대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특정 용역에 투입된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총 용역금액 중 특정 용역에 귀속되는 용역 대가 역시 구분하여 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고등법원은 누가, 어느 시점에 입증서류를 구비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세무기관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과 세무기관은 전년대비 용역보수 금액이 증가한 반면 용역에 투입된 인원 및 시간이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9 October 2018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전가격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의 비용에 대해 납세자와 같이 단순한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세무기관의 검토 결과, 해당 배부기준은 납세자의 상대적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용역의 대가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지 못함과 동시에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므로 고등법원은 세무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추가 납부세액을 검토하겠다는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세무기관은 Amade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액 대비 그룹 내 용역 제공 서비스 비용의 정상가격비율을 산정하였고 납세자의 공제 대상 금액의 상당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이전가격 관점에서, 법원이 사실상 매출액 기준의 정상가격 산정을 허용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부분이며 또한 고등법원이 세무기관이 제시한 최종 비교가능회사가 단 2개 회사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시된 판례에 비추어, 증빙서류는 용역의 내용과 기타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설정된 그룹의 이전가격을 뒷받침해야 하며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룹 내 일관된 관계 설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며 세무기관이 Amadeu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행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세무기관의 분석 과정상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Thailand's transfer pricing law in force from 1 January 2019

태국: 19년1월부터 시행되는 이전가격 법안

2018년 9월, 의회(National Legislative Assembly)는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새로운 이전가격정책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이전가격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간의 특수관계여부 및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전가격 신고서식"의 의무 신고 및 제출의 최소 기준이 연간 소득 기준 3000만 THB에서 2억 THB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가격 신고서식"은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인 "PND 50"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최초로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서신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의 공식 요청 시, 기타 이전가격 문서의 구비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최소 연간 소득 금액 (2억 THB)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연간 소득 금액 기준에 도달한 회사는 국세청의 요청 시, 60 일 이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이전가격 법안은 국왕의 서명 후에 발효될 것이며, 이전가격 법안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초부터 "이전가격 신고서식" 및 이전가격 보고서의 제출이 요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소 기준에 도달한 회사는 새로운 이전가격 법안에 따른 이전가격정책의 일부로 "이전가격 신고서식" 및 이전가격 보고서에 대한 규정 준수 사항을 도입하고 철저한 이전가격분석 및 문서화 작성을 통해 새로운 태국 이전가격 체계에 맞춘 준비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태국의 새로운 이전가격 세부 규정 및 엄격한 문서화 요구 사항과 관련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이전가격 조정 또는 벌금 부과 시 협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태국 국세청은 현재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규정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기업은 향후 태국 이전가격 관련 사항과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India Tax Headaches Easing for Multinationals \(Bloomberg Tax Management Transfer Pricing Report - Oct 19, 2018\) By Benjamin Parkin](#)

인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문제 완화

인도 내 세율 및 분쟁비용은 아직 높은 편이나, 인도 과세당국이 인도를 외국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2012년 시작된 인도 APA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기존에 만연하던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APA는 다국적기업들이 인도 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이동 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협상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거의 10년 동안의 사업활동에 대해 이전가격 관련 소송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공격성(aggression)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Dhruva Advisors LLP의 이전가격 파트너 Rahul Mitra는 말합니다.

하지만 Mitra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음을 지적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APA의 편의성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해 APA가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인도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확대 방침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인도 과세당국은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 조사 및 소송을 진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Vodafone Group Plc 와 Cairn Energy Plc 등의 사례들은 인도 세법개정안의 소급적용(retroactive amendment) 에 기인한 것이며 Microsoft Corp. 및 Canon Inc. 등의 다국적기업들 역시 이전가격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관계자들은 APA 프로그램이 많은 기업들의 신뢰(confidence) 회복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측 자료에 따르면 인도 과세당국은 2017-2018 사업연도* 말 기준, 219개의 APA 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와 같은 타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쌍방 APA 건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APA 신청 회사 수는 2017-2018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66% 증가한 168 개로 늘어났습니다.

“APA 프로그램은 중요한 사건(development) 이며 외국 기업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Transprice Tax Advisors LLP 창립자 Akshay Kenkre 는 말합니다.

(*) 2017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디지털 경제

하지만 인도 진출을 꾀하는 회사들은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당국들은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 없이도 활동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 기반 회사들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는데 인도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과세제도 도입의 선두주자로 여겨집니다.

OECD 는 점점 중요해지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합의안(consensus) 을 2020년까지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몇몇 국가들은 독자적인 조치를 강구해왔습니다.

인도는 2016년에 인도 상인들이 외국 웹사이트에 광고 게재 시 적용되는 원천세인 균등세(equalization levy) 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입지(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의 개념을 법안에 도입함으로써 물리적 실체가 없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Mitra 및 다른 관계자들은 인도 정부가 이러한 디지털 과세안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과세당국은 앞서 언급한 개선동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과세당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국적 기업, 대형 투자자 등 모두에게

많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Dhruva 의 U.S head Lawrence Zlatkin 은 말합니다.

[Vietnam Scrutinizing Intercompany Royalty Payments \(Bloomberg Tax Management Transfer Pricing Report - Oct 18, 2018\) By Lien Hoang](#)

베트남: 특수관계자간 로열티 거래 조사

베트남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소재 관계사(partners)로 이전하는 기술의 적정 대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들이 기술적 노하우를 베트남 소재 관계사들에게 전수해줄 것을 기대하는 한편, 현지 기업들이 이러한 관계(partnership)를 소득의 해외이전 및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효된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Law)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전 계약서를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Grant Thornton 이전가격 부문의 Senior Manager 인 Nguyen Bao Thai 는 새 법안 발효에 따라 최근 몇 달간 많은 회사들의 세금 부담액(tax bill)이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홍콩으로의 소득이전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홍콩에 소재한 모회사에게 모회사 소유의 소프트웨어 혹은 기타 기술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로열티 계약서가 베트남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사관은 해당 로열티 지급을 부당(improper)하다고 보아 베트남 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건과 관련하여 이의제기(challenge) 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이전거래 및 로열티 지급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 이슈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Thai 는 말합니다.

Thai는 세무조사 증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관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다른 사례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예시에서, 과세당국은 로열티 지급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열티가 아니라 저세율 국가인 홍콩으로의 소득이전을 위한 이전가격 전략으로 보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로열티 지급이 정당

한 경우라 할 지라도, 조사관은 해당 금액이 베트남 소재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다지급(inflated)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2006 기술이전법을 대체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무 사항(obligation)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조사방식

KPMG는 상기 법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현지 과세당국은 등록된 계약서 기록문서(registered contractual documentation) 가 없을 경우 로열티를 손금불산입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법안은 과세당국이 (베트남으로의) 특수관계자간 기술이전(the inbound transfer of technology)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Deloitte Vietnam 의 tax leader 인 Thomas McClelland는 베트남 공무원들이 세법 외 타 법규(non-tax laws) 를 근거로 과거 이전가격 조정처분을 정당화해왔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한 외국기업은 베트남 내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하는 시점에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 세입징수관들은 현지 사업체(local business)가 프랜차이즈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특수관계자간 지급(related-party payment)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도입된 기술이전법은 세입징수관들이 조사 시 근거로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McClelland는 말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용역대가 지급

McClelland 은 인터뷰에서 “과거 베트남 과세당국은 해외 용역수수료에 항상 주목해온 반면 로열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로열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KPMG 는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계약을 이번 개정안 측면에서 검토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계약을 베트남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혹은 그와 동등한 시/지역 소재 정부기관에 등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Thai는 “개정안이 발효된 지 몇 달이 흘렀으나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 고 말하며 개정안에 대한 인식 및 해당 법안이 기업의 사업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